

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(안)

2018 . 1. 8.

문서번호	경영지원팀-664	선임	경영지원팀장	경영본부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8.01.10.	01/08 황현아	01/09 지서해	01/09 代지서 해	01/10 이근	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선임	선임	책임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 (91)호		01/09 김경아	01/08 서현교	01/08 정은석		

추진근거	-재단 회계규정 -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	협의결과
사 업 비			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타 :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관 련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(안)

개정된 재단의 회계 및 재무, 계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규의 개정을 통해 적절한 절차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

1. 개정사유

■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사실 증명에 따른 회계 증빙서류 첨부

□ 국민연금법 제95조 2(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)

-제 95조의 2(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) :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·제조·구매·용역 등.....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

□ 이와 관련, 계약관련 대가를 지급할 때 '4대보험 완납증명서'를 회계증빙서류로 첨부

■ 회계 규정과 내규의 상충된 내용 변경 및 회계관계자 직명 변경

□ 회계 규정 제54조(결산승인) ②항과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45조(결산서의 작성) ②항의 내용이 상충

-회계규정 제54조 ②항 :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이내에...

-시행내규 제45조 ②항 : 분임회계 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...

□ 회계관계자의 직명을 구(舊) 조직 직명에서 개편된 조직의 직명에 맞게 변경

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계약심사 제외 사업, 계약의 하자보증 조항 변경

□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제외사업

□ 지방계약법 제20조~제21조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~제72조, 행정안전부 예규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~제15장)에 따른 계약의 하자보증

2. 주요골자

- 제16조(증빙서류의 첨부) :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내용 추가
- 제34조(용어의 정의) : 예산 업무 관련 담당자 직명 수정
- 제45조(결산서의 작성) :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의 변경(2월 이내 → 3월 이내)
- 제48조(계약심사 제외사업) :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내용 삭제 및 추가
- 제56조(계약의 하자보증) : 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추가
- 별지 제1호 서식(회계결의서) 변경

3. 개정내용

- 제16조(증빙서류의 첨부)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내용 추가
 - '1.물품대금', '2.공사 또는 용역대금' : 대금청구서(통장사본), 검사(검수)조서,, 세금계산서, 4대 보험 완납증명서(계약에 의한 지출)
- 제34조(용어의 정의)
 - 예산관리부서는 '창의경영실' → '예산 총괄담당부서', 예산관리자는 '창의경영실장' → '예산관리부서 부서장'으로 변경
- 제45조(결산서의 작성) ②항
 - 회계연도 종료 후 '2개월' → '3개월' 변경
- 제48조(계약심사 제외사업)
 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발주사업으로 개정
 - 2억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신설
 -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항목 신설
- 제50조(입찰유의서 등), 제51조(계약요청)
 - 회계책임자의 '창의경영실장' 개정
- 제56조(계약의 하자보증)
 - 하자담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같은법 시행령,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한다로 개정
- 별지 제1호 서식

- 회계결의서 양식 수정(텍스트화 된 직명을 전산화하여 현 직제에 맞는 직명으로 자동 입력되게 변경)

4. 참고사항

- 절 차 : 대표이사 승인
- 시행일 : 대표이사 승인일로부터 시행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6조(증빙서류의 첨부) ①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빙서류 중 회계담당부서에서 첨부·보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물품대금 : 대금청구서(통장사본), 검사(검수)조서, 방침(품의)서, 영수(입금)증, 시·국세완납증명서(수의계약 제외), 세금계산서 등 2. 공사 또는 용역대금 : 대금청구서(통장사본), 검사(검수)조서, 방침(품의)서, 영수(입금)증, 시·국세완납증명서(수의계약 제외), 세금계산서 등 3.~7. (생략) 	<p>제16조(증빙서류의 첨부) ①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빙서류 중 회계담당부서에서 첨부·보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물품대금 : 대금청구서(통장사본), 검사(검수)조서, 방침(품의)서, 영수(입금)증, 시·국세완납증명서(수의계약 제외), 세금계산서, 4대 보험 완납증명서(계약에 의한 지출) 등 2. 공사 또는 용역대금 : 대금청구서(통장사본), 검사(검수)조서, 방침(품의)서, 영수(입금)증, 시·국세완납증명서(수의계약 제외), 세금계산서, 4대 보험 완납증명서(계약에 의한 지출) 등 3.~7. (생략)
<p>제34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3. “예산관리부서”라 함은 예산 총괄담당 부서인 창의경영실을 말한다. 4. (생략) 	<p>제34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3. “예산관리부서”라 함은 예산 총괄담당 부서를 말한다. 4. (생략)

현 행	개정안
<p>5. “예산관리자”라 함은 창의경영실장을 말하고, 부문예산관리자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.</p> <p>제45조(결산서의 작성) ①결산에 관한 사항은 분임회계책임자가 작성한다.</p> <p>②분임회계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와 재단 감사의 감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48조(계약심사 제외사업) ① 내규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</p> <p>1.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 발주사업</p> <p>2.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.~나. (생략)</p> <p>다.그 밖에 사업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사업</p>	<p>5. “예산관리자”라 함은 예산관리부서 부서장을 말하고, 부문예산관리자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.</p> <p>제45조(결산서의 작성) ①결산에 관한 사항은 분임회계책임자가 작성한다.</p> <p>②분임회계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와 재단 감사의 감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48조(계약심사 제외사업) ① 내규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</p> <p>1.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발주사업</p> <p>2.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.~나. (생략)</p> <p>다. <삭제></p> <p>라.2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·구매</p> <p>3.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</p> <p>가.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</p> <p>나. 천재지변,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</p> <p>다. 상품권, 종량제 규격봉투,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0조(입찰유의서 등) ①입찰유의서(물품구매·공사·용역), 계약일반조건(물품구매·공사·용역)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별표(1~7)와 같이 하며, 내용의 수정·보완은 회계책임자(창의경영실장)가 승인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1조(계약요청) 각 부서의 장은 물품의 제조, 구매, 수리 등과 공사, 용역에 관한 계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담당부서장(창의경영실장)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7조에 규정한 소액물품의 경우와 여비, 수당, 특근매식비, 신문구독 등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제56조(계약의 하자보증) 계약종류별 하자담보는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”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.</p> <p>< 별지 제1호 서식 ></p>	<p>판단되는 물품(완제품) 제조·구매 사업</p> <p>라.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</p> <p>마. 서울특별시장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바.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에서 연 1회 통보 ‘한시적 계약심사 제외사업’</p> <p>제50조(입찰유의서 등) ①입찰유의서(물품구매·공사·용역), 계약일반조건(물품구매·공사·용역)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별표(1~7)와 같이 하며, 내용의 수정·보완은 회계책임자(창의경영실장)가 승인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1조(계약요청) 각 부서의 장은 물품의 제조, 구매, 수리 등과 공사, 용역에 관한 계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담당부서장(창의경영실장)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7조에 규정한 소액물품의 경우와 여비, 수당, 특근매식비, 신문구독 등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제56조(계약의 하자보증) 계약종류별 하자담보는 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”, 같은법 시행령과 “행정안전부 예규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)”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.</p> <p>< 별지 제1호 서식 ></p>

현 행

회 계 결 의 서

(지출, 수입, 이체)

발의부서명		결 재	
예산 과 목	관	대표이사	
	항	사무국장	
	세항	실.부장	
	목	담 당	
발의일자		협 조	
결재일자			
채 주	상 호	지출	예 금 주
	대표자		은 행 명
지출방법		계좌번호	
금 액		적 요	
확 인		회 계	
예 산	지출(수입)	담 당	창의경영실장

개정안

회 계 결 의 서

발의부서명		경영지원팀-664		결 재	
예산 과 목	관				
	항				
	세항				
	목				
발의일자		협 조			
결재일자					
채 주	상 호	지출	예금주		
	대표자		은행명		
지출방법		계좌번호			
금 액		적 요			
확인			회계		
예산	지출(수입)				